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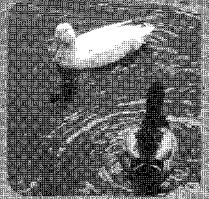


[축산법령]

「종계장·부화장 방역관리요령」 고시개정(안) 행정예고

「종계장·부화장 방역관리요령(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9-164호, 2009.8.25.)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
장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2009년 9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-



1. 개정이유

- 추백리·가금티프스 검사시 혈청검사법은 교차반응에 의한 비특이 반응 유발 및 진단키트 수입애로 등으로 방역상 혼선이 초래되어 혈청검사법에 균분리 검사법을 추가함으로써 진단의 신뢰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추백리·가금티프스 검사방법 변경

(안 제10조)

- 1차 검사법(급속전혈평판응집반응법 또는 급속혈청평판응집반응법) 중 급속전혈평판응집반응법을 삭제함
- 3차 검사법으로 균분리 검사를 신설하고, 1차 및 2차 검사결과 양성율이 30%미만인 계사는 3차 검사를 실시토록 함

나. 추백리·가금티프스 판정기준 조정

(안 제11조)

- 1차 및 2차 검사결과 양성율이 30%이상인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하고, 3차 검사결과 1수이상 균분리가 된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함

- 1차 및 2차 검사결과 양성율이 30%미만인 계사에 대해 3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음성계군으로 판정

다.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

(안 제12조)

- 검사기관은 1차 및 2차검사결과 양성율이 30%미만인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상황 점검 실시
 - 폐사계 발생에 따른 병성감정시 균분리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시로 동 요령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병성감정에 따라 균분리 된 경우 해당 계사는 양성계군로 봄

3. 기타 자세한 사항

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ifaff.go.kr>) 상단의 “정보광장-법령정보-입법행정예고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